

08-01(통권43호)

방송통신융합 논의와 향후의 과제

2008. 1. 1.

요약

- I. 들어가는 말
- II. 국내 현황
- III. 해외 현황
- IV. 향후의 과제

작성 : 성숙희 책임연구원(3219-5433)

sukhees@kbi.re.kr

요약

- 국내의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대응한 규제 및 진흥 체계 정비에 대한 논의가 10년간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결실을 내지 못함.
 - 참여정부 출범 전 대선 후보자 공약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을 내세웠으나 임기내 공약 실현이 어려워 보임.
 - 2007년 12월 28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IPTV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통합기구법안은 IPTV 법안에 밀려 마무리되지 못함.
 - 개별 서비스 도입 문제에 치중하다 보니 거시적인 틀을 결정하는 수평적 규제 체계로의 전환과 같은 사안은 논의의 중심에 서지 못함.
 - 방송통신융합추진위 차원에서 수평적 규제 체계로의 전환 논의가 시도되었으나 도입 방식 및 시기 등과 관련하여 부처간에 이견이 존재하자 통합규제 기구의 과제로 넘김.
- 90년대 후반부터 규제 체계에 대한 법·제도 정비를 마친 일부 국가에서는 그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2차 정비를 단행함.
 - 유럽연합은 2002년 전송과 콘텐츠로 구분하는 수평적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전송 규제 지침을 채택한 데 이어, 2007년에는 규제 프레임워크 개정 검토안을 발표하는 한편, ‘국경없는 텔레비전 지침’을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으로 확대 개정함.
 - 독일은 융합서비스들을 위한 별도의 법률들을 제정한 지 10년 만인 2007년에는 관련법들을 통합하여 규제 체계를 재정비함.
 - 일본은 2010년을 기해 EU형의 수평적 규제 체계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함. 이를 위해 정보통신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임.

□ 우리나라 규제 체계 논의의 과제

○ 규제 및 진흥 체계 정비의 시급성

- 해외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규제 체계의 재정비를 시도하는 시점에서 더 이상 실기할 시간이 없음. 융합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할 것임.

○ 수평적 규제 체계 도입으로 논의 확대

- 우리나라의 논의는 규제기구 및 IPTV 등 큰 그림보다는 하위 주제에 집중해 온 듯함. 향후의 논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문제나 개별 서비스의 규제 차원을 넘어 규제의 큰 틀과 원칙을 수립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임.
- 동일한 서비스들에 대해 동일한 규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평적 규제 체계로의 전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콘텐츠 진흥 체계 정비

- 융추위 차원에서 콘텐츠 진흥 추진체계에 대해 일부 논의하기는 하였지만 비전 제시로 이어지지 못한 것임. 콘텐츠 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거시적인 진흥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많은 국가들에서 이미 콘텐츠 진흥을 주요 산업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진흥을 위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구상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I. 들어가는 말

- 1998년부터 시작된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규제 제도 개편 논의는 10년을 끌며 여전히 결실을 내지 못함.
 - 참여정부 출범 전 대선 후보자 공약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을 내세웠으나 임기 내 공약 실현은 어려워 보임.
 - 2006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이하 융추위)의 출범 및 2007년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이하 국회 특위)의 구성 등으로 법제 정비에 탄력이 붙는 듯하였으나 2007년 12월 28일 IPTV법만이 비관 속에 입법으로 연결됨.
 - 규제의 틀을 수평적 체계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는 통합기구법 제정에 가려져 뒷전으로 물러남.
 - 부처별로 상이한 안을 제시하며 산발적인 논의만 이루어짐. 융추위 차원에서도 일부 논의가 있었으나 전환 방식 및 시기에 있어 이견만 확인한 채 통합된 규제 기구의 과제로 넘김.
 - 콘텐츠 진흥정책 추진체계 정비와 관련하여 융추위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문화부, 정통부, 방송위간 진흥 업무의 중복 및 소관 갈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데 그침.
- 우리나라에서 방송통신융합 규제 및 진흥 체계 정비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사이 일부 국가들에서는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한 이차 정비에 들어감.
 - 유럽연합은 2002년 전송/콘텐츠의 이분류적 수평적 규제 체계를 도입하여 전송 부분의 규제 지침을 제시함. 2007년에는 전송 부분의 성과를 검토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정 검토안'을 발표하는 한편, 콘텐츠 부분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을 채택함.
 -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은 유럽연합의 MEDIA 2007과도 상호 연관되는 구

조로 콘텐츠의 진흥을 염두에 둠.

- 독일은 1997년 융합 환경을 위한 법제 준비를 한 데 이어 2007년에는 관련법들을 시장 환경에 맞춰 재정비함.
-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해 오던 일본은 2007년 12월 2010년에는 수평적 규제 체계로 전격 전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힘.
 - 2010년을 목표로 방송·통신 관련법을 정보통신법(가칭)으로 통합할 예정임.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융합 규제 및 진흥 체계 준비를 위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는 한편 이차 준비에 나선 해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방송통신융합 논의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II. 국내 논의 현황

- 방송통신융합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는 1998년 12월에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인 방송개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됨.
 - 방송개혁위원회는 2001년 7월부터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방송개혁위원회 1999).
- 참여정부는 통합기구 설치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지만, 2005년 IPTV를 비롯한 융합서비스의 도입 및 규제문제로 부처간 갈등이 표면화되기 전까지는 융합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않음.¹⁾
 - 방송통신융합 논의 초기부터 불거진 문화부, 정통부, 방송위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1) “방송통신통합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관한 방안과 로드맵”(디지털 뉴미디어 포럼 1주년 기념 정책 세미나, 2006)

진전을 보지 못함.

-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는 정통부의 입장에 대해 방송위와 방송계가 반발하는 양상이 지속됨. 문화부도 콘텐츠 진흥 소관 문제를 제기함.

□ 부처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2006년 7월 28일 활동 시작)가 출범하여 방송통신 기구통합법안을 마련함으로써 논의가 본격화됨.

- 용추위에서는 IPTV 서비스 도입방안 및 콘텐츠 진흥 정책 추진체계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함.

□ 정부가 제출(2007년 1월 11일)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에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며(2007년 1월 19일) IPTV 도입법안이 구체화됨.

1. 방송통신융합기구법 논의 현황

1) 정부안

□ 용추위는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합의제 위원회)를 설치하되 독립제 요소를 포함하는 통합위원회 설치안을 다수안으로 정부에 제출함(2006년 10월 27일).

□ 정부는 용추위가 제출한 방송통신 기구개편 방안을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2007년 1월 11일 국회에 제출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방송통신 관련 기구의 재정립 : 방송위와 정통부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진흥·규제 기능을 통합기구로 이관.
 - 통합기구 형태 : 독립성 보장의 측면에서 합의제, 진흥적 측면에서(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독임제 성격 부여.
 - 위원회의 위상 :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며,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제하되 방송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승인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행정감독권 규정 적용을 배제함.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침. 상임위원 2인은 각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
 - 위원회의 소관 사무 : 방송·정보통신·전파관리·우정제도 등. 우편·우편환·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는 관련 법률에 의해 소관 사무의 변경이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담당.
 -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 설치 : 현행 방송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민간기구로 설치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 내용심의의 공익성과 공정성 확보.

2) 국회 논의 현황

□ 국회의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2007년 3월 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연내 13번의 전체회의와 9차례의 법률안심사소위 회의²⁾를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하고 2007년 12월 말까지 예정되었던 활동기간을 2008년 3월 말로 연장함.

2) 총 9차례 법률안심사소위 논의 중 통합기구법에 대한 검토는 5차례 이루어짐.

<표 1> 통합기구법 관련 국회 논의 현황

일시	내용
1월11일	·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출
1월17일	· 방송통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활동기한 2007년 12월 31일)
1월22일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특위에 회부
2월 8일	·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통지
3월 2일	· 제1차 방송통신특별위원회 회의
3월12일	· 법률안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 수렴(국무조정실, 정보통신부)
3월13일	· 법률안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 수렴(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4월13일	· 관련 부처 입장에 대한 질의·응답(국무조정실,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5월 3일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심사 · 법률안심사소위원회 구성
5월 9일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5월28일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심사 계속
6월20일	(법안심사소위)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심사
7월13일	· IPTV 관련 의원입법(3건) 검토 · 방송통신융합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9월14일	(법안심사소위)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심사 및 IPTV 관련 의원입법(7건) 심사
9월28일	(법안심사소위)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심사 및 IPTV 관련 의원입법(7건) 심사
11월19일	(법안심사소위)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심사 및 IPTV 관련 의원입법(7건) 심사

- 2·3차 회의에서는 통합기구법에 대한 관련 부처의 입장을 청취하고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됨. 의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성격 규정 문제와 규제정책과 진흥정책의 분리 여부에 대해 주로 문제 제기함
 - 대통령이 위원 전원 임명 :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국회의 추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독립제적 성격 : 장관이 부처의 수장을 맡는 독립제적 성격을 부여한 것은 정보통신 산업의 진흥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방통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정통부의 우정 기능 분리 문제 : 통합기구에서 우정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과 분리해 타 부처로 이관하거나 우정청(가칭)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콘텐츠 진흥업무 소관 문제 : 융추위가 콘텐츠 소관문제는 기구개편안을 마련한

뒤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통합기구법에는 콘텐츠 관련 부분이 제외되어 있음. 문화부에서는 콘텐츠 진흥체계를 일원화하자는 입장이며, 정통부와 문화부는 이에 반대함.

- 통합기구법의 한계 : 방송위와 정통부의 기구만을 통합하는 내용에 머물러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관한 내용은 전무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특위 5차 회의(2007년 5월 3일)에서부터 통합기구법을 심사하기 시작함. 법안 심사를 위해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
 - 진흥정책과 규제정책을 통합하는 정부안과 달리 진흥과 규제정책을 분리하는 안이 제시됨.
 - 통합기구법과 IPTV법의 처리순서와 처리시기에 대해 문제가 제기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논의 현황

- 제1·2차 법률안심사소위 회의(9월 11·14일)에서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을 분리하기로 결정함.
-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 회의(9월 17일)에서 진흥/규제 분리 방안을 중점 논의함.
 - 진흥/규제 분리 원칙 하에 ‘위원회가 규제 집행 기능만을 담당하는 안’에 잠정합의함.
- 제4차 소위 회의(9월 28일)에서는 제3차 소위의 잠정 합의안이 번복되고,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함.
-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 회의(10월 15일)에서부터는 IPTV 관련 법률을 중점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이후 통합기구법은 거의 논의되지 않음.

□ 특위는 통합기구법 상정을 계기로 구성되었으나, 통합기구법보다는 IPTV 관련법 제정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논의가 IPTV 관련 법 제정으로 전환됨. 통합기구법안의 심사과정도 관련 당사자들의 이견을 확인하는 단계를 벗어나지 못함.

2. IPTV 법제 논의 현황

□ IPTV 서비스 도입을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이 논란 끝에 2007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누더기법안이라는 비난에 직면해 있기는 하지만 IPTV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음. 이하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정리함.

1) 융추위안

□ 융추위 출범 초기, 2006년 11월 중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고 2007년 상반기 중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제시함. 2006년 11~12월에 정통부와 방송위에서 시범사업을 공동 실시하였으나, 주요 현안에 대한 갈등(<표 2> 참고) 조정의 실패로 2006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 이행되지 못함.

<표 2> IPTV 서비스 관련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입장 차이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서비스의 성격	TV와 오디오, 데이터 방송이 결합한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실시간 방송과 부가통신서비스가 합쳐진 ‘광대역융합서비스’
적용법률	방송법 개정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가칭)’ 제정
인허가 방식	방송사업자로 ‘허가’	전송사업으로서 ‘등록’
진입제한	진입을 허용하되 자회사로 분리해서 참여	자회사 분리 없이 참여 가능해야 함
사업권역	전국 77개 권역(SO와 동일)	전국사업권역(사업자 자율)

□ 시장에서는 이미 IPTV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와 정통부의 규제에 대한 입장 차이로 2년여 동안 법안 마련에 실패하였음.³⁾

3) 이미 2005년 10월과 11월에 유승희 의원이 정보미디어사업법안, 김재홍 의원이 방송법

- 방송위는 IPTV를 '별정방송'으로 규정하여 방송법으로 규제하려는 입장인 데 반해, 정통부는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신규 부가 서비스로 규정하여 제3의 특별법으로 규제하려는 입장임.

- 융추위에서 IPTV 도입의 원칙⁴⁾에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IPTV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여 다수안을 정부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함(4월 20일).

- 적용법률(방송법, 융합서비스법, 특별법 등) 문제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함.

- IPTV 도입 정책방안
 - 서비스 성격 : 방송이 주 서비스, 통신이 부수적 서비스로 정의함.
 - 사업자 분류 : IPTV 사업자는 방송사업자(플랫폼)로 규정함.
 - 면허방식 : 허가제(실시간 방송+VOD 등)
 - 사업권역 : 전국권역을 대상으로 하되,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 제시
 - 진입제한 : 대기업,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을 허용, 일간신문과 뉴스통신 지분 참여는 49% 이하로 완화, 외국인 지분은 49%로 제한.
 - 시장 점유율 제한 : 전체 유료방송 시장(IPTV+케이블TV+위성방송 가입자)을 합한 기준으로 33% 초과 점유 금지
 - 망 동등 접근 의무 : 사업 면허시 모든 사업자에 부과
 - 콘텐츠 활성화 : 사업자 허가시 콘텐츠 활성화 조건 부여

2) 국회 논의 현황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특위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률이 상정·검토되지 않음.

4) 1.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우선한다. 2. 콘텐츠 육성·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한다. 3. 신기술과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4. 방송이 갖는 공익성은 보호되어야 한다. 5. 공정 경쟁의 여건을 조성한다.

□ 융추위가 IPTV 관련 법안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의원 입법의 형태로 발의된 총 7개의 법안(<표 3> 참고)을 국회의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함.

□ 특위에서도 IPTV를 둘러싼 정통부와 방송위간의 논쟁이 재현됨. 특위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들은 제3의 법률제정과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였고, 문화관광위원들은 IPTV는 방송이라는 입장을 견지함.

□ 특위에서는 9월~11월 사이 5회에 걸쳐 7개의 IPTV 관련 법률을 법률안심사소위에서 검토한 후, 2007년 11월 20일 특위 대안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을 확정함.

- 11월 23일 본 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대기업이나 외국 자본의 보도·종합편성 채널 운영 여부와 외국인 간주 조항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특위는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문제 조항을 수정해 의결함.

□ 국회는 2007년 12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통과시킴.

- 2008년 3월 말까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IPTV 상용화를 위한 시행령과 고시기준을 제정해야 함.

<표 3> IPTV 관련 법률 논의 과정

일시	내용
7월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TV 관련 법률 3건 상정·검토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이용에 관한 방송사업법안(홍창선 의원 대표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손봉숙 의원 대표 발의) 디지털미디어서비스법안(서상기 의원 대표 발의)
7월1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TV 관련 법률 3건 상정·검토 정보미디어사업법안(유승희 의원 대표 발의) 放送法 일부개정 법률안(김재홍 의원 대표 발의)

	유·무선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이광철 의원 대표 발의) · 방송통신 융합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IPTV 논의됨)
7월18일	· 6개 IPTV 관련 법률안 검토
9월11일	·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지병문 의원 대표 발의) 상정 · 기 상정된 법률안 6건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부
9월14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 IPTV 관련 7건 법률안 심사
9월28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 IPTV 관련 7건 법률안 심사 계속
10월15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 IPTV 관련 7건 법률안 심사 계속
11월6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 IPTV 관련 7건 법률안 심사 계속
11월19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 IPTV 관련 7건 법률안 심사 계속
11월20일	· 기 상정된 법률안 7건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대안) 심사 · 7건의 IPTV 관계 법률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11월23일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 일부 문항(외국인 간주 조항 등) 수정
12월28일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 국회 본 회의 통과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주요 내용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정의 : 유선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
- 사업권역 :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하고,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등은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모든 지역방송 권역에서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규정(단, 중소 사업자는 전국 77개 권역에 의무적으로 들어갈 의무는 없음)
- 허가기간 : 5년 범위 이내(현행 방송법 3년)
- 겸영금지 : 대기업, 신문사, 통신사의 경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의 겸영이나 주식 소유 금지
- 외국인 소유 제한 : 외국인 등이 다른 외국인과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과 주식예탁증서 등 등가물과 출자지분 또는

지분을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함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 문제 : 제12조 1항에서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
- 시장점유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함한 국내 유료방송사업 가입 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단, 케이블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법 시행 후 1년간은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망 동등접근권 보장
- 등록 및 승인 : 콘텐츠 사업자는 방송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보도, 종합편성, 홈쇼핑을 하려는 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심의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만을 심의

3. 콘텐츠 논의

□ 방송통신 융합 환경하에서 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체계적인 논의는 융추위에서 규제기구 개편 논의와 더불어 이루어짐.

- 융추위는 콘텐츠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콘텐츠산업 정책 추진체계 방안 마련을 2007년의 주요 의제로 선정하여 논의함.
 - 콘텐츠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 유통의 가속화로 관련 분야가 융합되면서 콘텐츠 소관 부처간의 갈등⁵⁾이 야기됨. 콘텐츠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처간의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됨.

5) 문화부와 정통부간에는 디지털콘텐츠와 관련하여, 방송위와 문화부 사이에는 방송영상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업무 중복 갈등이 있음.

□ 융추위는 논의 끝에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와 ‘콘텐츠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복지 증진’을 콘텐츠 진흥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문화부에 콘텐츠 정책 총괄 기능을 부여하는 안을 다수안으로, 신설될 방송통신융합기구에 총괄기능을 부여하는 안을 소수안으로 채택하여 국무총리에 건의함.(2007. 7. 28.)

Ⅲ. 해외 현황

□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부응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왔음.

○ 미국

– 1996년의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을 통해 매체간 경계를 허물고 자유경쟁을 촉진하며 통신서비스의 제공범위를 확대함.

○ 독일

– 1997년에 세계 최초로 융합서비스만을 위한 멀티미디어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들에 대해 시장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

○ 일본

– 2001년에 전송로 융합을 제도화한 별정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을 제정하였음.
– 2002년부터 총무성에서 방송과 통신을 총괄함.

○ 영국

– 2003년의 커뮤니케이션법으로 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전면 개편함.
– 방송과 통신의 각 영역을 규제하는 수직적 규제방식을 탈피하여 수평적 규제체제로 전환하고, 통합 기구(Ofcom)에서 규제를 총괄함.

○ 프랑스

- 2004년 ‘전자 커뮤니케이션과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한 법’과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융합에 대응함. 이를 통해 수평적 규제체제로 전환하는 EU의 지침을 따르고 있음.

□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대응한 법·제도 정비는 2007년부터 2차 정비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하에서는 2단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 독일, 일본의 사례를 정리함.

1. EU

1) 규제 체계 정비

□ EU는 방송통신융합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녹서(97년) → 리뷰(99년) → 지침(02년)이라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해 왔음.

- EU는 전송과 콘텐츠로 구분하는 수평적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2002년 전송 규제 지침을 채택함.
 - 규제 프로그램워크(regulatory framework) 지침 및 5가지의 특별지침(인가지침, 접근지침, 보편적서비스지침, 경쟁지침,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지침)을 통해 전송계층 즉,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서비스 규제.
 - 콘텐츠는 ‘시청각정책에 대한 원칙 및 가이드 라인(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the Community's Audiovisual Policy in the Digital Age, 1999)’을 기반으로 방송에 대해서는 ‘국경없는 텔레비전 지침(1989/1997 개정)’으로, 정보사회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지침(2000)’으로 규제해옴.

□ EU의 콘텐츠 규제 체계 개선

- EU의 규제가 수평적 규제체계를 지향함에도 콘텐츠 규제와 관련하여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상이한 목적을 가진 두 개의 규제들이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 1997년에 개정된 TV지침은 기술 중립적으로 전송 네트워크에 상관없이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실제 규제는 공중을 직접적으로 대하는 TV에만 적용되었고, 융합서비스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제외됨.
 - 집행위원회에서는 기술적인 진보와 시장 발전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TV지침의 개정작업을 시작하여 2005년 12월 13일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에 관한 제안 (proposal for a Directive on Audiovisual Media Services)을 공식 채택함. 유럽 의회가 2007년 11월 29일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을 승인함에 따라⁶⁾ 회원국들은 2009년 말까지 새로운 지침을 자국법에 반영해야 함.⁷⁾

<표 4> EU의 수평규제 체계

	서비스		규제
콘텐츠 계층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선형 서비스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
		비선형 서비스	
	정보사회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침
전송계층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일반규제 프레임워크 지침 (5개 지침 포함)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의 서비스 분류

- 콘텐츠 계층을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와 정보사회 서비스로 구분함.⁸⁾

6) 유럽의회 보도자료(Commission welcomes start of a new era for Europe's audiovisual media; Reference: IP/07/1809 Data: 29/11/2007)

7) 유럽의회 홈페이지 제공 뉴스(European Parliament. 2007. 11. 29. New TV and Product placement rules should be applied before end 2009, www.europa.eu/news)

8) 일부는 규제의 범위가 너무 복잡하고 경직되어 있어 TV와 영상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 비판함. 다른 측면에서는 새 지침이 너무 성급하게 마련되어 모바일 미디어나 인터넷

-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는 다시 선형(linear) 콘텐츠와 비선형(non-linear) 콘텐츠로 구분됨.
- 비선형 콘텐츠는 기존 텔레비전 방송의 선형 콘텐츠와 다른 만큼 규제의 차이를 인정함. 즉, 비선형 콘텐츠 공급자에게는 국경없는 텔레비전 지침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경감시킴으로써 융합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함.

□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의 주요 내용

- 지침의 가장 큰 특징은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와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를 ‘편집 책임(editorial responsibility)’⁹⁾ 개념을 이용하여 계층화하고 있다는 점임. 새 지침의 규제범위는 텔레비전과 유사한(television-like) 서비스로 규정됨. ‘방송(broadcasting)’이라는 용어 대신에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audiovisual media service)’가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 두 번째 특징은 비선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임. 새로운 제안에서는 선형 서비스와 비선형 서비스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라는 틀에서 공동의 기본 원칙이 적용됨. 비선형 서비스도 청소년 보호, 인종적인 갈등을 부추기는 내용의 금지 등 최소한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선형 서비스와 동일한 규제를 받음.¹⁰⁾
- 세 번째 특징은 몇몇 회원국에 의해 퇴색될 가능성이 엿보였던 원산국(Country of Origin)원칙이 이사회(Council)와 유럽의회의 동의하에 확실히 보장되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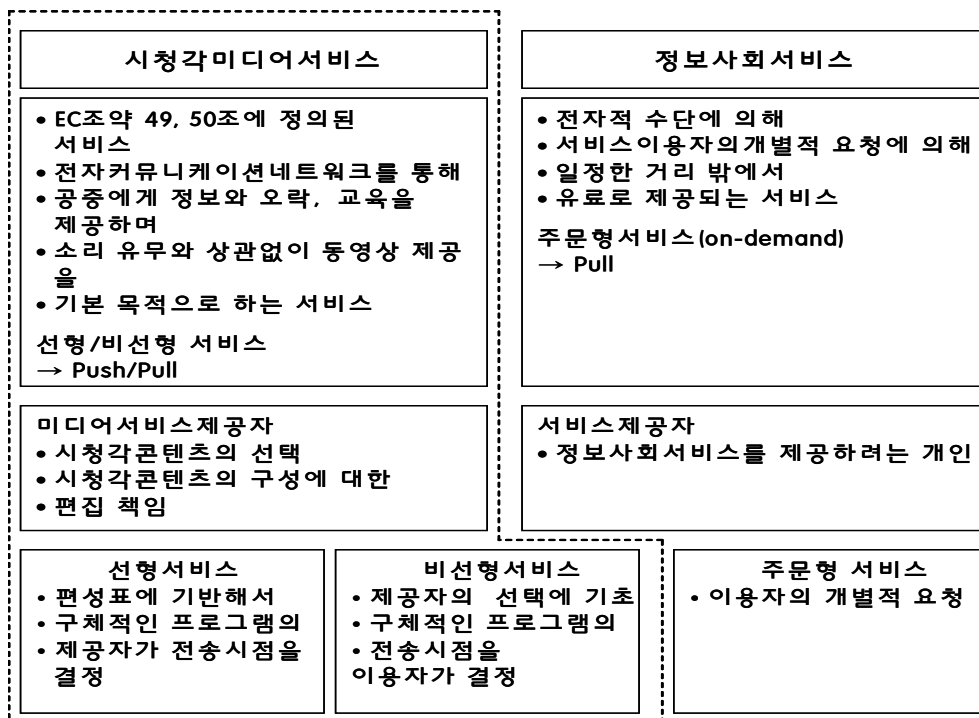
서비스를 규제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텔레커뮤니케이션 및 멀티미디어 기업 등은 새 지침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새로운 지침에서 추구하는 여러 내용들은 일반 법률을 통해서도 규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9) 편집 책임은 2006년 11월 버전의 초안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는데, 이는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가 편성표에 준거해서 또는 주문형 서비스의 목록을 통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선택이나 편성을 통제하는 어떠한 형태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Julian Pike an Farrer & Co. 2006. DVB, VOD, DAM! What Does it All Mean? Part 2: Attempting to create legal certainty in audiovisual media regulation)

10) 하지만 비선형 서비스에는 방송 쿼터제가 적용하지 않음. 국경을 넘나드는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고 프로그램 선택권이 이용자에게 있는 서비스의 특성상 쿼터제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임.

점임.

- EU차원의 규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비선형 서비스도 선형 서비스처럼 동일한 규제환경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며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음.
- 네 번째 특징은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최소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임.¹¹⁾



출처: Scheuer, Alexander. 2006. Traditional paradigms for new services?. Munich Personal RePEe Archive Paper No. 3517

[그림 1]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와 정보사회서비스의 구분

11) 새로운 지침의 설명 부분(Recitals)에서는 사회에 대해 특별히 중요하고 문화적 차원에서 특징화된 비선형 서비스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 확대·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도 콘텐츠를 전송하는 역할만을 담당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자들이 직접 VOD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새로운 지침의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Draft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Consolidated Text including EP First Reading amendments accepted in full and the amended Commission proposal, 2005/0260(COD), European Commission. 2005. Modern rules for TV and TV-like services. European Commission Information Society and Media

□ EU의 전송 규제 체계 개선 논의 착수

- 2007년 11월 13일 집행위원회는 ‘규제 프레임워크 개정 검토안’을 발표함.
 - 2010년 효력 발생을 목표로 논의될 개정 검토안은 2002년의 규제 프레임워크의 보완 및 향후 규제 방향을 종합함.
 - 개정 검토안은 EU 전송 부문이 내포한 문제점들과 기존 프레임워크의 한계점들을 바탕으로 ‘경쟁 촉진을 위한 보다 적합한 규제 체계로의 전환’, ‘전송 부문 단일 시장의 완성’, ‘이용자와의 연계’라는 세 가지 기본 목표를 설정함.(오수민 2007)

2) 콘텐츠 진흥정책

□ EU 집행위원회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개정시 콘텐츠 진흥정책인 Media 2007¹²⁾과의 연계를 고려하였다고 밝혔듯이 규제 수립시 진흥을 염두에 둠(EBU 2007).

- EU는 Media Programme¹³⁾과 E-Content Programme, European Script Fund 등을 통해 시청각 미디어와 영화산업, 멀티미디어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12) 1990년 12월, TV방송의 경쟁이 심화되고 유럽 영화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유럽 영상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된 Media Programme의 네 번째 실행 프로그램임. MEDIA I: 1991-1995, Media II: 1996-2000, Media Plus/Media Training: 2001-2006, 집행위원회 홈페이지(ec.europa.eu) ‘Media’를 참고하여 정리함.

13) Media Programme은 ① 영상산업을 육성하여 유럽의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고, ② 유럽 공동체뿐 아니라 세계 영상물 시장에서 유럽의 시청각 프로그램의 유통을 확대하고, ③ 유럽 시청각물의 경쟁력 증대를 목표로 함. 특히, Media 2007은 기술과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디지털 기술의 사용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규모 영상산업 기업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Media 2007에서는 5개 실천 영역을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① 영상산업 종사자(및 지원자) 훈련, ② 제작 기획 및 제작사 발전, ③ 영화와 시청각 프로그램의 배급, ④ 영화, 시청각 프로그램의 프로모션(영화제 지원 포함), ⑤ 수평적 실천 프로그램/시범사업(pilot projects).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 i2010¹⁴⁾

- 정보사회와 미디어에 관한 EU의 정책틀로서 유럽 경제 성장과 취업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5개년 성장 계획으로 i2010전략을 통해 유럽 차원에서 정보통신 및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전략을 추진.
- i2010전략은 매년 추진계획과 성과를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음. 아래는 2005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진행된 i2010의 콘텐츠 진흥과 관련 주요 내용임.¹⁵⁾
 - ①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제안(2005년 12월 13일)
 - ② 온라인 영화의 시작과 발전을 위한 유럽 헌장(European Charter for the Development and the Take-up Film Online, 2006년 5월 23일): 소비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영화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모색이 목적.
 - ③ Media 2007 채택(Decision 1718/2006/EC, 2006년 11월 15일)
 - ④ eContentPlus¹⁶⁾ 2006 Work Programme의 제안과 채택

2. 독일

1) 규제 체계 정비

□ 독일은 멀티미디어의 출현으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는 현재의 법체계로는 답을 제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융합서비스만을 위한 제3의 법을 제정한 후 상황의 변화에 따라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며 융합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 왔음.

14)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ec.europa.eu) 'i2010'을 참고하여 정리함.

15) i2010 - Annual Information Society Report 2007, Volume 2(European Commission, 2007. 3)

16)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08년까지 약 1억 5천만 유로의 예산을 가지고 유럽 디지털콘텐츠의 문화 다양성과 언어 다양성 지원 및 최신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EU범국가적 프로젝트. 유럽의 디지털콘텐츠 사용 확산을 목표로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디지털 자원의 접근성과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지리정보, 교육 콘텐츠, 디지털 도서관 등 영역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모집하고 사업 추진.

- 1997년 세계 최초로 멀티미디어법 제정.
 - 연방과 주 정부의 전통적인 권한 분할¹⁷⁾로 헌법상 방송과 통신은 하나의 규제 틀 안에 들어갈 수 없고, 따라서 연방이라는 특성과, 통신은 연방 관할이며, 방송은 주정부 소관이라는 권한 분할을 고수한 상태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 서비스 영역만을 관장하는 제3의 법을 입법함.
 - 통신 관련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연방차원의 정보서비스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법(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Gesetze : IuKDG)¹⁸⁾을 제정하고, 주정부 차원에서는 방송유사 서비스들을 위한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 (Staatsvertrag über Mediendienste : MDStV)’을 체결함으로써 법체계를 정비함.
 - 정보서비스 및 커뮤니케이션서비스법과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은 한편으로는 필수적인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보호,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소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규제틀을 마련함.

□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법적 기반

- 고전적인 방송과의 상이한 거리를 근거로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법률들을 제정함. 단계적으로
 - 고전적인 방송은 방송국가협정이,
 - 순수한 텔레서비스와 방송의 중간 영역은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이,
 - 기본적으로 순수한 양방향 텔레서비스는 정보서비스 및 커뮤니케이션서비스법 (IuKDG)이 규율하는 형태였음.
- 그러나 방송, 통신, 융합 서비스별로 규제법규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점은

17) 독일연방기본법 73조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고유한 입법 권한 분할을 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책 관할 분야를 나누고 있음. 이에 따르면 우편, 통신 분야는 연방에, 문화, 신문, 방송 등은 주정부의 권한에 속함.

18) 총 11절로 구성되어 있고, 3절까지는 각 조문이 하나의 법률로 구성됨. 1절과 2절은 최초로 제정된 것이고 이 외의 조항들은 이미 존재하는 연방법들의 관련 조항들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거나 개정하여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시킴. 즉 멀티미디어라는 입법 대상에 의해 법체계가 통합되어 구성됨.

독일 멀티미디어법 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됨.

□ 인접법과의 조화를 위한 법률의 개정

-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은 체결 당시, 완결된 법률이라기보다는 실험적 성격이 강함을 인식. 멀티미디어 서비스 발달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속적인 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발.

- 1997년 8월 1일 효력 발생 이후 청소년매체보호국가협정에 근거하여 2002년 개정된 데 이어, 2005년에도 제8차 방송국가협정에 의거하여 개정됨.

- 텔레서비스법은 1997년 7월 22일 정보서비스 및 커뮤니케이션서비스법의 제1절로 제정된 후 2001년 12월 14일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개정.

- 텔레서비스개인정보보호법(Teledienstedatenschutzgesetz : TDDSG)은 정보서비스 및 커뮤니케이션서비스법 제2절로 제정된 후 2001년 12월 14일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개정.

□ 2007년 제정된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 TMG)은 텔레서비스¹⁹⁾ 및 미디어서비스²⁰⁾의 개념을 통합하여 텔레미디어로 단순화시킴.

- 텔레미디어법이 발효되면서 텔레서비스법, 텔레서비스개인정보보호법,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은 폐지됨.

- 기존의 세 법들은 텔레미디어법으로 통합되었고, 내용적인 특성이 강한 텔레미디어는 방송국가협정에서 일부 추가적인 규정들로 규제함.

19) 텔레서비스의 개념 : 기호, 그림, 음성과 같은 조합된 데이터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통신 경로'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전자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20) 미디어 서비스의 개념 : 일반을 대상으로 무선 또는 유선에 의한 전자파를 이용하여 보급되는 문자, 음성 및 영상 형태의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 제2조 1항).

- 방송 이외의 콘텐츠 서비스들을 텔레미디어라는 개념으로 통합하여 콘텐츠 부분의 분류 체계를 간소화함.
 - 텔레서비스와 미디어서비스가 텔레미디어로 통합됨으로써 서비스 분류가 간편해졌고, 콘텐츠 규제와 관련해서는 텔레미디어와 방송간의 경계 설정만이 필요하게 됨.
 - “통신법(Telekommunikationsgesetz, TKG) 3조 24번에 의거해 통신망을 통해 전적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통신서비스이거나, 또는 방송국가협정 2조에 의해 전적으로 방송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전자적 정보서비스 및 커뮤니케이션서비스들(elektronische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에 적용”됨(텔레미디어법 제1조 1항 1문단)

3. 일본

1) 규제 체계 정비

- 방송·통신을 아우르는 통합법을 제정하지 않은 채, 융합의 진행정도에 따라 수시로 법률을 정비하는 형태를 취해왔음.
- 2001년부터 방송과 통신을 총괄하고 있는 총무성²¹⁾은 방송·통신 중간 영역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도록 전송로 융합을 제도화한 별정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2001년)을 제정했음.

□ 본격적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형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최근 논의를 시작하여 2010년 경에는 정보통신법(가칭)을 완성할 예정임.²²⁾

21) 일본에서는 행정개혁 차원에서 2001년 방송과 통신정책을 담당해오던 우정성을 해체하고 기능 대부분이 총무성으로 이관되었음.

22) 안창현(2007); 김항(2007); 미디어오늘, 2007년 6월 28일; 디지털타임즈, 2007년 7월 24일을 요약·정리하였음.

- 일본에서 방통융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개혁 논의는 2006년에 본격화됨.
 - 관련 논의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통신방송의 종합적인 법체계에 관한 연구회’가 총무성 산하에 구성되었고, 2007년 6월 중간 보고서에 이어 12월 최종보고서를 발표함.
 - 이에 따르면 2008년 초부터 통합법인 정보통신법(가칭) 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고, 2010년에 입법을 완료한 후, 2011년에 시행하는 것이 목표임.
- 정보통신법(가칭)이 담고 있는 내용은 EU형 수평적 규제체계의로의 전환이며, 콘텐츠사업자, 플랫폼사업자, 전송사업자의 3계층 분류를 설정하고 있음.
- 콘텐츠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능과 영향력에 따라 미디어로서 최소한 유지해야 하는 규제만 부과할 예정임.
 - 사회적 기능과 영향력을 기준으로 ‘특별미디어서비스’, ‘일반미디어서비스’, ‘공연통신’ 등으로 분류. 특별미디어서비스는 지상파TV를 의미하며, 일반미디어서비스는 위성방송, 케이블TV, 인터넷상의 영성전달 서비스 등이 포함됨.
 - 특별미디어서비스는 현재의 규제를 원칙적으로 유지할 것을, 일반미디어서비스는 기능과 영향력에 따라 규제수준을 차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인터넷 신문이나 블로그 등도 영향력을 고려하여 규제대상에 포함함.
 - ‘공연성(公然性)을 가지는 통신’ 가운데 현재의 방송과 유사한 콘텐츠 전송 서비스는 미디어서비스에 포함하여 규제하고, 기타의 공연성을 가지는 통신은 공연통신(가칭)으로 분류해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에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2) 콘텐츠 진흥 정책

□ 세계 제2의 문화산업 강국인 일본은 정부의 지원보다는 민간부문의 기제를 활용하여 문화산업을 육성하였으나, 최근 ‘지적재산입국’을 주창하며 콘텐츠 해외유통, 지적재산권 보호, 우수인재 양성 등을 위해 정부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 일본은 정부부처 주도로 방송통신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국가전략산업이자 성장

유망산업인 방송통신 분야에서 강력한 정책적 추진력을 발휘해 옴.

- 지적재산 추진계획
 - ‘지식경제’ 환경하에서 경제성장의 동력인 콘텐츠의 창출과 그 성과를 지적재산으로 보호·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2년 11월에 지적재산전략대강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함.
 - 2003년 3월부터는 동법에 기초하여 내각에 콘텐츠 정책과 관련하여 부처간의 공조와 조율을 담당할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고, 매년 지적재산 추진계획을 발표함.
 - 지적재산 추진계획을 통해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 교육과 계발의 충실, 해외진개 확대 및 해적판 대책 강화 등 콘텐츠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일본지적재산본부, 한국산업기술재단 역 2004)
- 2004년 6월에는 콘텐츠 진흥법(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범정부조직인 지적재산전략본부와 관련부처 등이 중심이 되어 콘텐츠 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음.

IV. 향후의 과제

□ 규제 및 진흥 체계 정비의 시급성

- 해외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규제 체계의 2차 정비를 시도하기 시작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는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누더기법안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2007년을 넘기지 않고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여타 부분에서의 규제 논의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함.
- 융합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규제 체계 정비는 시급한 사안임.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할 것임.

□ 수평적 규제 체계 전환으로 논의 확대

- 우리나라의 논의는 규제기구 및 IPTV 등 큰 그림보다는 하위 주제에 집중해 온 듯함. 향후의 논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문제나 개별 서비스의 규제 차원을 넘어 규제의 큰 틀과 원칙을 수립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논의는 규제 기구가 정비되면 나머지는 그 기관에 위임한다는 입장이 강함. 규제기구란 규제의 틀과 원칙에 입각하여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임.
- 융합 서비스에 대응하는 통합법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신규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특별법’의 틀 안에서 도입될 수밖에 없음. 동일한 서비스들에 대해 동일한 규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평적 규제 체계로의 전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콘텐츠 진흥 체계 정비

- 융추위의 차원에서 콘텐츠 진흥 추진체계에 대해 일부 논의되기는 하였지만 국가적인 비전 제시로 이어지지 못함. 콘텐츠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거시적인 진흥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콘텐츠는 사회문화적으로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많은 국가들에서 이미 콘텐츠 진흥을 주요 산업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콘텐츠 진흥을 위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구상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김 향(2007), 일본, 통신/방송 관련 새로운 법제와 규칙에 대한 반응. 『동향과 분석』 통권 259호
- 방송개혁위원회(1999), 『방송개혁의 방향과 과제(최종보고서)』
- 성욱제(2005), EU의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 개정임박. 『해외방송정보』 2005년 9월호
- 안창현(2007), 일 통신·방송 관련법, ‘정보통신법’으로 일원화 움직임. 『해외방송정보』 2007년 8월호 통권 713호
- 오수민(2007), EU 규제 프레임워크 개정 검토안 분석, 『정보통신정책』 제19권 23호 통권 430호, 2007년 12월 17일
- 유지연(2005), 일본의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을 위한 주요 과제 검토. 『정보통신정책』 2005년 3월 2일
- 이기현 외(2005), 『세계 주요국의 미디어 융합형 서비스』,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상우 외 5인(2005), 융합환경의 네트워크·콘텐츠 규제, KISDI 이슈리포트 05-02
- 이상우(2006), 통신·방송 융합시대의 수평적 규제체계, KISDI 이슈리포트 06-04
- 일본지적재산본부, 한국산업기술재단 역(2004),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04』.
- EBU(2007), EBU welcomes the political agreement of the EU Council. EBU viewpoint 2007.05(www.ebu.ch)
- European Commission(2005), Modern rules for TV and TV-like services. European Commission Information Society and Media
- European Commission(2007. 9.), Comments on the European Commission on an Opinion from the House of Lords
- European Parliament Press Releases. Reference: IP/07/1809 Data: 29/11/2007. Commission welcomes start of a new era for Europe's audiovisual media
- European Parliament. 2007. 11. 29. New TV and Product placement rules should be applied before end 2009(www.europa.eu/news)
- Draft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Consolidated Text including EP First Reading amendments accepted in full and the amended Commission proposal, 2005/0260(COD)
- Pike, Julian an Farrer & Co.(2006), DVB, VOD, DAM! What Does is All Mean? Part 2: Attempting to create legal certainty in audiovisual media regulation
- Scheuer, Alexander(2006), Traditional paradigms for new services? : The Commission Proposal for a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Munich Personal RePEe Archive Paper No. 3517
-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무조정실, 2007. 3)
디지털타임스 2007년 12월 31일